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8.

의안 번호	459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1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21. 10. 18.)
  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장원석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2년도 출연 예정인 바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
○ 출연근거

-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

-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-「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(출연금 요구서)」

○ 출연내용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

○ 출 연 금 : 21,200천원

○ 세부내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2022 요구액	2021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6-01 출연금	21,200	18,500	2,700	14.6%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21,200	18,500	2,700	14.6%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[1]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특히 출연은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은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[2]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액 기준은 공단의 매출액, 직원수, 자산 등 가중치를 두어 분담금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 매년 우리 구에 통보되었으며 2022년 출연금은 작년대비 14.6퍼센트 증가한 2천1백2십만원 임.

---

1) **지방재정법**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**지방공기업법**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. 끝.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

의 안 번 호	459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1.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제 출 부 서 : 기획예산과

1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2년도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출연개요

가. 출연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
-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  [편성목 306 출연금 세부사항(P.110)]
- 「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(출연금 요구서)」
  [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3873(2021. 8. 4.)]

다. 출연내용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

라. 출 연 금 : 21,200천원

마.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2022 요구액	2021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6-01 출연금	**21,200**	**18,500**	**2,700**	**14.6%**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**21,200**	**18,500**	**2,700**	**14.6%**

붙임 1. 산출내역 1부.
2. 관련법령 1부.
3.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1부. 끝.

[붙임1]

산 출 내 역

□ 산출근거

○ 「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」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2193(2021.7.30.)

○ 「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」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3873(2021.8.4.)

□ 분담기준

○ 직원수·매출액·자산 규모에 따른 구간별 산정 금액에 의거 분담

○ 각 구간별로 9,000천원씩 증가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·공단은 4,000천원 감경

<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>

구간별 산정 금액(천원)		직원수	매출액 및 자산	가중치		
				직원수	매출액	자 산
0.5	1,500	50명 이하	-	해 당 없 음		
1	9,000	51 ~ 150명	10억원 미만	0.3	0.5	0.2
2	18,000	151 ~ 300명	10억원이상 ~ 100억원미만			
3	27,000	301명~1,000명	10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			
4	36,000	1,001명~2,000명	500억원이상 ~ 1,000억원미만			
5	45,000	2,001명 이상	1,000억원 이상			

□ 분담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기 관	직원수(0.3)		매출액(0.5)		자산(0.2)		기초 감경	배정액
	구간	금액	구간	금액	구간	금액		
강남구도시관리공단	3	8,100	3	13,500	2	3,600	-4,000	**21,200**

□ 세부산출내역

○ 산출식 : (27,000천원 x 0.3) + (27,000천원 x 0.5) + (18,000천원 x 0.2)
- 4,000천원 = 21,200천원

○ 각 소계의 합(D) - 기초단체 감경분 = 총 배정액

(단위 : 천원)

해당분야	구간	산정금액(A)	가중치(B)	소 계 (A×B=C)	기초단체 감경분	총 배정액
직원수	3	27,000	0.3	8,100		
매출액	3	27,000	0.5	13,500		
자산	2	18,000	0.2	3,600		
소계의 합(D)				25,200	- 4,000	21,200

[붙임2]

■ 관련법령

○ **지방재정법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**지방공기업법**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**지방공기업법 시행령**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 · 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■ 관련규정

○ **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**

306 출연금(p.110)

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 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, **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**

[붙임3]

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

□ 기관현황

○ 설립일 : 1992. 3. 9.

○ 위　치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-6

○ 인　력 : 임원 12 / 직원 54 / 전문연구인력 400

□ 출연목적 : 지방공기업 각종 지원사업 수행

○ 공정하고 신뢰받는 **경영평가 실시**

·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

·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

· 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의 경영평가

○ 시의성 있는 **정책연구**를 통한 지방공기업 현안 해결

○ **각종 교육**을 통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

○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당면현안에 대한 **경영컨설팅**으로 경영개선 유도

○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실시

(내부만족도 조사,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, 각종 박람회 운영·지원 등)

□ 2022 출연금 규모

○ 총 **43.8**억원(시·도 : 10.1억원, 지방공사·공단 : 33.7억원)

□ 2022 주요 사업계획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비고
정 책 연 구	연중	• 정책연구과제 수행(25개 과제 내외)	
컨 설 팅	연중	• 심층 컨설팅(20개 기관 내외) • 맞춤형 컨설팅(20개 기관 내외) •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(5개 기관 내외) • 집단 컨설팅 등	
경 영 평 가	3~12월	• 행정안전부 위탁 :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(163개 기관)	
타 당 성 검 토	연중	•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(36개 과제) •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(8개 과제) • 출자·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(8개 과제)	
교 육 연 수	연중	• 공무원과정(990명) • 지방공사공단과정(2,050명) • 공통과정(2,730명) • 출자·출연기관 과정(550명) • 특별 및 위탁과정 등(1,000명) • 사이버교육(3,000명)	
시도지원사업 및 경영지원	연중	•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역량 강화 지원 •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•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·운영 •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•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(법무, 인사노무, 회계세무) 및 사례집 발간	

□ 2022 세부 세입 · 세출 전망

〈세 입〉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 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출 연 금	4,383,100	◦ 시도 출연금(17개 시도) : 1,008,000 ◦ 방공사·공단 출연금(150개 기관) : 3,375,100	
경 영 평 가	3,270,000	◦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위탁 : 3,270,000	'21년 실계약금액
고객만족도조사	1,973,625	◦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(375개 기관)	
교 육 연 수	1,778,700	◦ 공무원과정(990명) : 203,481 ◦ 지방공사·공단과정(2,050명) : 587,007 ◦ 공통과정(2,730명) : 761,722 ◦ 출자·출연기관 과정(550명) : 157,490 ◦ 특별 및 맞춤형 과정(1,000명) : 69,000	
타 당 성 조 사	4,040,000	◦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- 36개 과제 × 80,000(단가) = 2,880,000 ◦ 지방공사·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- 8개 과제 × 75,000(단가) = 600,000 ◦ 지방 출자·출연 설립 타당성 검토 - 8개 과제 × 70,000(단가) = 560,000	
채 용 대 행	469,000	◦ 지방공사·공단 등 채용대행 사업(70인)	
기 타 수 입	397,912	◦ 임대료 수입 - 16,163 × 2층 × 12월 = 387,912 ◦ 운영자금 이자 : 10,000	
합 계	16,312,337		

〈세 출〉

(단위 : 천원)

지출항목	지출 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경영평가사업비	1,967,200	◦ 보상금, 여비, 회의비 등 '21년 당초예산 적용	
고객만족도조사비	1,702,065	◦ 실사비, 여비, 수용비 등 '21년 지출 비율 적용	
교육연수사업비	1,599,810	◦ 강사수당, 수수료, 수용비, 여비 등 '21년 지출 비율 적용(무료교육 확대)	
타당성조사사업비	1,848,300	◦ 보상금, 여비, 회의비, 수용비	
채용대행사업비	294,300	◦ 필기·면접 진행 경비, 대관료 등	
정책연구	431,485	◦ 정책연구(심층) 25건 내외 수행, 외부인건비 등	
컨설팅	863,431	◦ 심층형·맞춤형 및 집단 컨설팅 등 ◦ 상시 자문비, 자문 사례집 제작 등	
정책포럼	30,000	◦ 학회 토론·발표수당, 대관료 등	
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비	279,469	◦ 지방공기업의 날 포상, 학술대회, 통계집 지원 등	
기타 지원사업	274,000	◦ 협의회 지원, 채용박람회 등	
인건비	4,582,108	◦ 기본연봉, 평가급 등 * 총 71명	
직무수행경비	117,600	◦ 직책급 업무추진비(실·팀장)	
퇴직급여	398,680	◦ 퇴직지불준비금	
기본운영비	1,796,828	◦ 공통수용비, 소모품비, 수당, 임차료, 차량비, 여비, 사회보험부담금, 홍보행사비, 교육훈련비, 복리후생비, 사업일용임금 등	
기타비용	45,500	◦ 공기구 : 20,500(컴퓨터, 모니터, 노트북 등 5대) ◦ 비 품 : 15,000(캐비닛, 이동서랍 등) ◦ 학자금대여 : 10,000(5,000 × 1명 × 2회)	
예비비	81,561		
합계	16,312,337		

청렴으로 신뢰받는 지방공기업평가원

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 목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요청(출연금 요구서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

나.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3758호(2021.07.28., 2022년 출연금 요구안 및 주요사업계획 제출)

※ 2021년 제2차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에서 시·도와 출연금 사전 협의(2021.07.23.)

다.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2193호(2021.07.30.,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)

3. 위 호와 관련, **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2022년 출연금 요구서(사업계획서,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)를 통보하오니 2022년 본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○ 출연금 요 구 액 : 4,383백만원(시·도 1,008백만원 / 지방공사·공단 3,375백만원)
○ 출연금 부담기관 : 17개 시·도 및 150개 지방공사·공단

붙임 1. 2022년 주요사업계획 1부.
2. 2022년 추정 재무제표 1부.
3.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(공문) 1부. 끝.

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이 사 장

수신자 시·도 공기업담당부서, 도시철도공사, 도시개발공사, 공사 및 공단, 특정공사공단

		★담당자	이하나	경영혁신팀장	이동열	기획운영실장	김기영
상임이사	성기석	이사장	08/04 최치국				
협조자							

시행 기획운영실-3873 (2021.08.04) 접수 경영지원부-6945 (2021.08.04)

우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-6 / erc21@erc.re.kr
전화 02-3489-2771 전송 02-3489-2709 / erc21@erc.re.kr / 공개